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2. 6.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2002.6.10 대통령령 제17624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03년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2002년 7월 31일 현재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함.(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안 제3조제2항)

■ 직급별 초과현원 : 49명

(단위 : 명)

	인원직					기능직					합계	비고	
	소계	6	7	8	9	소계	6	7	8	9			10
49	19	0	10	5	4	30	1	1	1	2	25	0	0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2002.3.25 법률 제6669호) 제103조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2.6.10 대통령령 제17624호)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령 부칙 제3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완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함.
-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p>	<p>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_____ _____</p>																
<p>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 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p>	<p>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_____ _____ _____ _____</p>																
<p>「표1」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u></p>	<p>「표1」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u></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1,332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1,306명</td> </tr> <tr> <td>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26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3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306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1,332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1,306명</td> </tr> <tr> <td>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26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3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306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3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306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3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306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p>「표2」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u></p>	<p>「표2」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u></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1,289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1,263명</td> </tr> <tr> <td>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26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28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63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1,289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1,263명</td> </tr> <tr> <td>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26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28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63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28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63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28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63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현행	개정안
<p>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p> <p>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6명(집행기관의 정원2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3명(집행기관의 정원 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3명(집행기관의 정원 5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일(별정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신설)</p> <p>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p>	<p>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p> <p>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p> <p>②제1항의 부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p>